

# 『서울형 장애물 없는(BF) 건물 인증제』

- 「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」란?
  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
- 법적근거
  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」
- 서울형 무장애 인증제 개요
  - 인증대상
    -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
    - 그 밖에 인증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의 경우
  - 지정 신청자 : 시설주, 소유자, 시공사 또는 관리자
  - 지정신청시기 : 공사 준공 또는 기존 시설물
  - 지정유효기간 : 5년
  - 인증수수료 : 없음
- 인증 기준 및 심사방법
  - 인증 심사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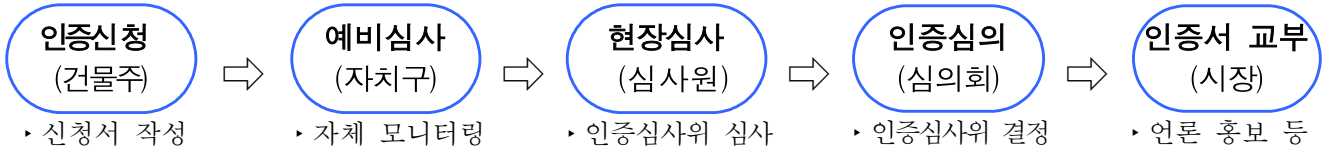
- ◆ 「편의증진법」 상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의무항목은 100% 완비
- ◆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구분 없이 25개 필수항목으로 통합
- ◆ 단,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「편의증진법」 제15조(적용의 완화)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

## ✦ 서울시 권장사항이란?

- 정부인증 평가항목에는 없으나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
-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권장항목 추가 (정성적 지표 및 인적서비스 포함)

- 심사방법 : 인증 심사원의 현장심사 및 인증 심의
  - 자치구별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예비심사제 운영  
(자치구별 예비심사 후 → 검토결과 및 신청서를 市에 제출)
  - 서울형 무장애 인증 심사위원의 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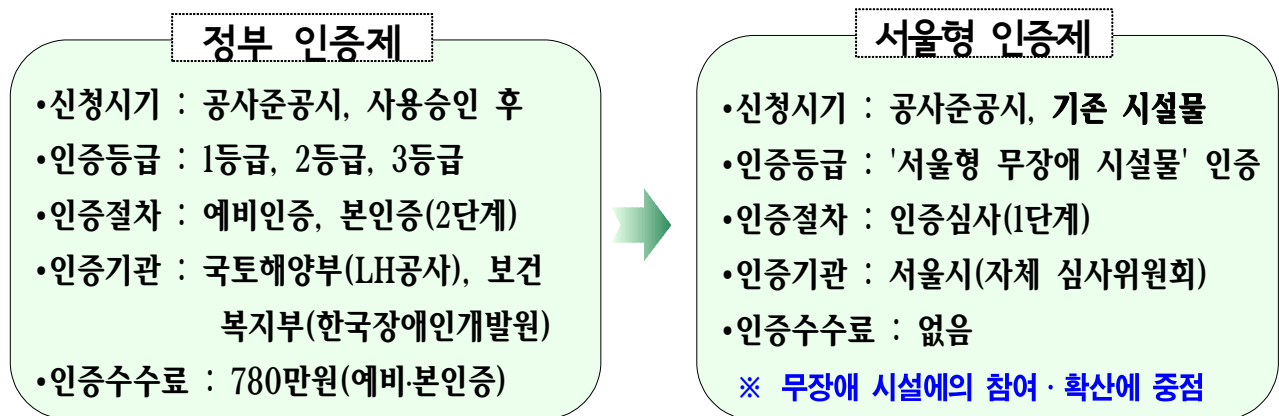
○ 인증 심사절차



□ 『서울형 무장애 건물』 인증 효과 및 지원

- 장애인·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(Barrier Free) 생활환경을 구현
  -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접근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을 없애고 보행환경 개선
- 서울형 무장애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
  - 「서울형 무장애 건물」에 대하여 인증서 및 명판을 교부하고 시정 언론 및 홍보매체 활용하여 무장애 건물 브랜드 마케팅 지원
-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(「편의증진법」 제13조 및 「조세제한특례법」 94조)

『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』의 차이점 : 쉽고, 빠르고, 무료이다!



『서울형』의 특징 ➡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당사자가 직접 점검·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임

# 2014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표

1.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.
2.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(25개 항목) 및 심사위원 현장심사의견 모두 충족하여야 함.
3.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(25개 항목)
  - ◆ 단,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「편의증진법」 제15조(적용의 완화)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

편의시설	설치 기준	비고
주출입구 접근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접근로의 유효폭 1.5미터이상 확보</li> <li>· 접근로는 단차 없이 기울기 1/18이하로 설치</li> <li>·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</li> </ul>	
장애인전용 주차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(층수표기)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</li> <li>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감시카메라(CCTV) 설치</li> </ul>	
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출입구는 높이차이(단차) 없이 설치</li> <li>· 다만,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/18이하로 설치</li> </ul>	
출입구(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</li> <li>· 다만,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</li> </ul>	
장애인용 승강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인용승강기 전용 호출버튼 구분하여 설치</li> <li>· 장애인용승강기 호출버튼(외부) 층수안내점자표지판 부착</li> <li>· 장애인용승강기 내부 후면거울 설치</li> </ul>	
장애인용 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</li> <li>·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.2미터 이상 확보</li> <li>·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.6미터*깊이1.8미터 이상 또는 폭1.4미터*깊이2.0미터 이상으로 설치</li> <li>·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</li> <li>·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</li> <li>·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</li> <li>· 장애인전용화장실 내 세면대 설치(거울 및 회전식수평손잡이포함)</li> <li>·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</li> <li>· 소변기손잡이는 각 층별 일반화장실 내에 1개소이상 설치</li> </ul>	
안내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음성안내 및 호출버튼이 설치된 촉지도식(반구형) 안내판 설치 * 호출시 보조안내서비스 제공</li> <li>· 청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문자안내표지판 설치</li> <li>· 주요 실명 점자표지판 출입문 옆 측면에 부착</li> </ul>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화상전화기 설치</li> <li>·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(공기주입 일체형) 설치</li> <li>· 주계단실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 및 점형블록 설치</li> </ul>	

※ 「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」 인증 현황

연번	구 별	인 증 시 설	인증년도	연번	구 별	인 증 시 설	인증년도
1	성 북	홍플러스월곡점	2010-12	14	서 초	서울성모병원	2012-10
2	광 진	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	2011-12	15	강 남	수서오피스빌딩	2012-10
3	동대문	롯데백화점 청량리점	2011-12	16	성 동	이마트 성수점	2013-09
4	강 북	롯데백화점 미아점	2011-12	17	용산구	㈜현대아이파크몰	2013-10
5	마 포	신촌성결교회	2011-12	18	동대문	하늘병원	2013-10
6	강 서	부민병원	2012-02	19	마 포	중소기업 DMCE타워	2013-10
7	노 원	늘편한집	2012-07	20	강 서	롯데몰 김포공항점	2013-10
8	구 로	JnK디지털 타워	2012-07	21	구 로	G+코오롱디지털타워	2013-10
9	관 악	농협 농산물백화점	2012-07	22	금 천	RSM타워	2013-10
10	노 원	롯데백화점 노원점	2012-10	23	영등포	선유도역1차 아이에스비즈타워	2013-10
11	서대문	구세군회관	2012-10	24	영등포	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빌딩	2013-10
12	금 천	마리오 아울렛3	2012-10	25	강 동	강동그린타워	2013-10
13	영등포	그랜드 컨벤션 센터	2012-10				